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850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2

I . 개요

1.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85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 31.

(3) 회 부 일 : 2025. 2. 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위축과 창업 생태계 약화가 우려됨.

이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지속적인 투자 촉진과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해당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 등(이인선의원안, 윤준병의원안(2), 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제13조) ○ 대상: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 ○ 특례: 창업기업, 벤처기업,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출자대상: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코넥스상장기업 ○ 출자방식: ① 직·간접* 출자 * 벤처투자조합등 ②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 ○ 출자방법: -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 - 기업이 설립된 후 <u>7년</u>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 납입 - 기업이 설립된 후 <u>7년</u> 이내에 잉여금의 자본전입 - 기업이 설립된 후 <u>7년</u> 이내에 채무의 자본전환 -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현행과 같음) ○ 특례: (현행과 같음) ○ 출자방식: (현행과 같음) ○ 출자방법: - 안도걸의원안: <u>7년</u> → <u>10년</u>으로 완화

현 행	개정안
(한도: 납입한 증자대금의 30%) * 코넥스상장기업일 경우 7년 이내 → 2년 이내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적용기한: <u>2028. 12. 31.</u> (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u>2030. 12. 31.</u> (이인선의의원안, 윤준병의원안(2)) ○ 시행일: 2026. 1. 1.(이인선의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안도걸의원안)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2))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안도걸의원안)

* 이인선의의원안 2025. 1. 31. 발의(의안번호 7850),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6),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94), 천하람의원안 2025. 7. 17. 발의(의안번호 11544), 추경호의원안 2025. 8. 8. 발의(의안번호 12052),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안도걸의원안 2025. 9. 30. 발의(의안번호 13400)

□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안도걸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 벤처기업 등을 7년 이내의 기업에서 10년 이내의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현행법 제13조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투자회사 등 모험자본(Venture Capital) 회사 등이¹⁾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등에 직접 또는 벤처펀드²⁾를 통해 투자하여 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

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출자자	방식	대상	법인세 비과세	
			주식양도차익	배당소득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직접	① 창업기업, ② 벤처기업, ③ 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⑤ 코넥스상장기업	○	○
	간접	벤처투자조합등 → ①, ②, ③, ④ 신기술사업자, ⑤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직접	②, ③, ④, ⑤		
	간접	벤처투자조합등 → ①, ②, ③, ④, ⑤		
벤처기업출자 유한회사	간접	벤처투자조합등 → ①, ②, ③, ④, ⑤		
기금운용법인등	간접	벤처투자조합등 → ①, ②, ③, ④		X
민간재간접벤처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간접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①, ②, ③, ④		

□ 동 제도는 중소기업 등에 창업자금 및 신기술 사업화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기한을 연장해왔음.

한편,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코넥스시장 상장 중소기업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출자대상에 추가하였고,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였음.

이후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³⁾이 벤처투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의 양도 차익을 비과세 특례의 대상으로 추가하였음.

- 동 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5년 16억원에서 2023년 205억원까지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2024년 65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5년부터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16	27	16	15	64	24	41	120	205	65	120	123

주: 2025년,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벤처투자규모가 2024년 들어 처음으로 반등한 만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가속화하기 위하여 세제 특례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2024년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지난 몇년간 투자가 감소했던 ICT 서비스, 바이오·의료, 게임산업 등의 투자 회복에 힘입어 2021년 이후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첫 반등에 성공하며 중장기적 성장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참고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Fund of funds)로서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확대하고 정책자금 중심의 모태펀드에 더해 벤처투자 생태계를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하여 2023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음.

[연도별 국내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원, %, 건, 개)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투자금액			23,803	34,249	42,777	43,045	76,802	67,640	53,977	66,315
	전년 대비	증감	-	+10,446	+8,528	+268	+33,757	-9,162	-13,633	+12,338
		증감률	-	+43.9	+24.9	+0.6	+78.4	-11.9	-25.3	+22.9
투자 건수			2,417	3,150	3,713	4,231	5,559	5,286	4,807	5,425
	건당 투자		9.8	10.9	11.5	10.2	13.8	12.8	11.2	12.2
피투자기업 수			1,266	1,399	1,608	2,130	2,438	2,474	2,309	2,494
	기업당 투자		18.8	24.5	26.6	20.2	31.5	27.3	23.7	26.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둘째, 벤처투자 증가에 따른 간접적인 고용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우 전체 기업 대비 고용 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고용 증가 효과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2년 기준 전체 기업의 고용 규모는 2.4% 증가한 반면, 33,045개 벤처기업은 약 745,800명을 고용해 채용인원이 전년 대비 8.1% 증가하였고, 특히 벤처투자를 받은 2007개사의 고용증가율은 29.8%를 기록하였음.

벤처투자가 증가하고 창업환경이 선진화될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시장의 개선이 기대되고, 벤처기업 등의 특성상 청년층에 대한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별 벤처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세제혜택 투자금에 대한 한

도가 없어 소수 유망기업에 자금과 세제 지원이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미풍양속 저해 업종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업종에 지원이 가능하여 이미 시장이 성숙했거나 과잉 투자가 우려되는 산업에도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⁴⁾

둘째, 안도결의원안과 같이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경영이 안정된 기업으로 투자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위험도가 높은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현행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4)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